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90
----------	-------

발의연월일 : 2019. 11. 5.

발의자 : 김현권 · 김철민 · 황주홍

오영훈 · 손금주 · 윤준호

이양수 · 손혜원 · 경대수

정운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등).

법률 제 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정비사업에 착수할”을 각각 “정비사업을 시작할”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어촌특화사업에 착수하지”를 “어촌특화사업을 시작하지”로 한다.

제16조제25호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에 착수한”을 “사업을 시작한”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개수”를 “개선”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계획 구역의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어촌특화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각각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생 략)

제16조(인·허가등의 의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협의·동의·면허·해제·신고 또는 승인 등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어촌특화발전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현행과 같음)



